#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7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유상범·정진석·한기호

김태흠 · 김용판 · 임이자

김성원 · 김도읍 · 배준영

이철규 • 권성동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 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 실패했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 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 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 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 2조, 제3조의2 신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법률 제 호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 1.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4.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6.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7.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8.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9.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10.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

- 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3(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이하"발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폐광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4.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각종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의 활용에 관한 사항
- 6.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7.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 8.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발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발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 3. 산업·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발전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 ① 발전지원위원회의 폐광지역 경

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 2.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 3.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사업 발굴 및 추진
- 4.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별 추진사업 평가 및 점검
- 5. 재원조달 및 관리
- 6.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원단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 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5(기초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 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 시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2조의6(사업계획 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 는 자가 국가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인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

- 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4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을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 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 · 제13조의3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치) 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첨단지식산업·물류산업·금융산업·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조성·관리
    - 다. 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첨단지식산업·물류산업·금융산업 조성·지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3. 폐광지역의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사

업

- 4.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폐광지역 관할 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⑥ 개발센터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 3. 그 밖의 수입금
- ⑦ 개발센터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⑨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3조의3(개발센터 시행계획) ① 개발센터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광지역 관할 지방자 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의2(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 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법인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3. 관광진흥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6. 정부의 보조금
  - 7. 차입금
  - 8.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 2.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 3.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 4.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 5.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 6.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 7.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 9.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자금
- 제23조의3(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의 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23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센터 설립위원회 (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개발센터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개발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 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1.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사항 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관한사항 4.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관한사항 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에관한사항 6.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사항

- 7.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 지에 관한 사항
- 8.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 의 진흥에 관한 사항
- 9.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10.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 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3(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 회) 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 전지원위원회(이하 "발전지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 한 사항
  - 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폐광지역에 대한 행정적·재

     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4.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추진사업과 관련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각종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6.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7.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 8.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발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③ 발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 는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 2.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 3. 산업·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발전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4(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
  단) ① 발전지원위원회의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
  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
  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 1.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원
  - 2.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 3.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사업 발굴 및 추진
     4.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별 추진사업 평가 및

점검

- 5. 재원조달 및 관리
- 6.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 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원단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5(기초조사)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조의6제3항 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3조 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 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 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

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3조의 의2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개발 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 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6(사업계획 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광지
역 경제개발센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신 설>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④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 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 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 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4항 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 ③ -----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 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사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 구하고 진흥지구로 지정된 기 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광지역 경제개발센 터의 설치) ① 폐광지역의 경 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 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고 한 다)를 설립한다.

- ②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실의 소 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3조의3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2.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u>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u> 관리·공급 및 임대
  -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 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 첨단지식산업·물류산업·금 융산업·건강산업의 육성· 지원 및 주택사업 조성·관 리
  - 다. 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 단지·산업단지·첨단지식산 업·물류산업·금융산업 조 성·지원
  - <u>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u> <u>업에 딸린 사업</u>
- 3. 폐광지역의 토지·물과 그 밖 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사업
- 4.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 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

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 합적 지원업무

<u>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u> <u>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u> <u>항</u>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폐광지역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탁받 은 업무
- ⑥개발센터는제5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을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달한다.
-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 다)
- 3. 그 밖의 수입금
- ① 개발센터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 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

   획에 관한 사항
-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 <u>항</u>
- 3.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 로 정하는 사항
- ⑨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제13조의3(개발센터 시행계획) ①

<신 설>

개발센터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항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 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개발센터 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

발센터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광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 원할 수 있다.

- 제23조의2(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의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u>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u> 호와 같다.
  -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자에게 「법인 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법인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3. 관광진흥기금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6. 정부의 보조금
- 7. 차입금
- 8.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자금
- 2.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 3.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 4.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 5.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 6.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 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 7.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u>자금</u>
-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 요한 자금

	9. 그 밖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에 드는 자금
<u>&lt;신 설&gt;</u>	제23조의3(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
	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
	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u>을 할 수 있다.</u>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 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 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 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 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 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 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 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 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
<신 설>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특별회 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의5(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 에관한특별법 부칙 ②(適用時限) 이 法은 2025년 12 | <삭 제>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관한특별법 부칙